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2011년 8월 22일

4. 근거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

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
및 부칙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. 12. 31 로 한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

<개정된 주요내용>

- (1) 안 제1조에서는 2008. 1. 1일자로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 8435호)가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조문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 가 “같은 법 제142조” 로 변경
- (2) 안 제3조에서는 “구금고” 란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라 2010. 9. 2일자로 제정된 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” 로 변경
- (3) 안 부칙에서 “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” 를 삭제하고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 를 추가하여 시행일 개정

<검토의견>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